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규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643

발 의 년 월 일 : 2023년 03월 29일
발 의 자 : 임규호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ㆍ경, 김성준, 성흠제, 이병도, 이영실, 이원형, 임종국, 정준호, 최기찬, 한ㆍ신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들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제9조제3항제1호 전자게시대 설치 할 수 있는 지역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여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갖추고 다양한 시각적 영상효과를 사용해 효과적인 정보전달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형상점가의 홍보를 돕고 불법현수막 감소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전자게시대 설치 할 수 있는 지역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규정함(안 제9조의2제3항제1호 추가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(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)③항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항1호나

나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등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제3항제1호 나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	제9조제3항제1호 (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) 나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, 골목형상점가 등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